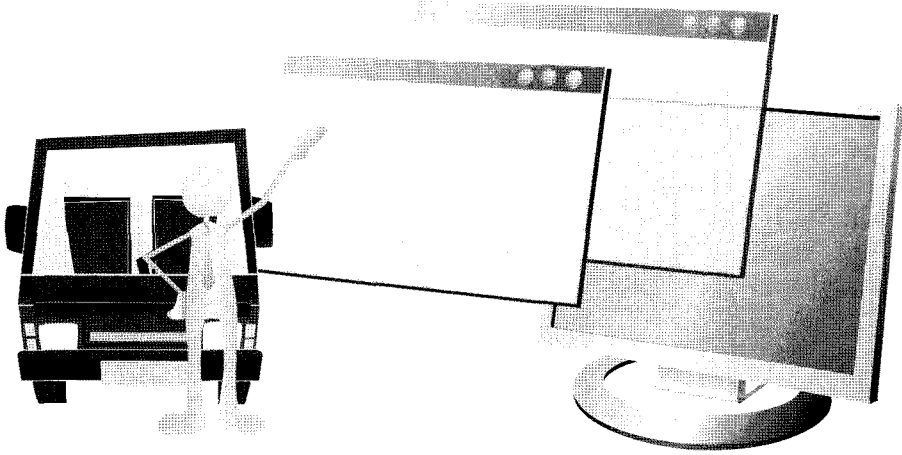




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운송업계 부담완화 위해...부정수급 방지 대책 함께 마련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2.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계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11.6.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 및 부정수급자 행정 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유가보조금 개요

□ 유가보조금 정의

- (유류세 연동 보조금)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 (유가 연동 보조금)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08.6.8)』에 따른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근거

구분	지급 근거	비고
노선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4조 제4호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호	
연안화물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의2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대중교통과, '10.7.)

유가보조금 지급단가('11.1.기준)

구분	차종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류세
경유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334.97원/ℓ 현재 유류세- '01.6월 유류세-BD공제액	528.75원/ℓ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행세
	일반버스	368.46원/ℓ 유류세연동보조금+VAT환급액	
	연안화물선	345.54원/ℓ (현재 유류세- '01.6월 유류세)×유종별 경유함유비율(%)	
부탄	택시	197.97원/ℓ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과금-감면액	221.36원/ℓ 개별소비세+교육세 +판매부과금
	택시 외	197.97원/ℓ '09.1월 유류세-' 01.6월 유류세	

최근 5년간 지급현황('06~'10)

(단위 : 억원)

년도	총계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06년	18,795	3,832	5,313	9,439	211
'07년	22,881	4,352	5,376	12,911	242
'08년	22,047	4,012	3,666	14,123	246
'09년	20,171	3,809	1,054	15,038	270
'10년	19,727	3,552	1,051	14,872	250

※에너지 세제개편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 : '01.7~'04.12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01.7~'06.6)하되,
 -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기간 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 : '05.1~'07.7

- '05년부터 시판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수송용 유류의 상대가격비를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 추진('05.7~'07.6)

휘발유 대비 油種간 상대가격 조정 비율

구분	휘발유	경유	LPG
2000. 6	100	47	26
2007. 7	100	85	50
OECD 평균	100	80	51